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정진술 의원
- 나. 의안번호: 제2179호
- 다. 발의일자: 2021. 2. 5.
- 라. 회부일자: 2021. 2. 9.

2. 제 안 사 유

- 2020년 12월 9일 「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함에 따라 ‘환경보전 계획’이 ‘환경계획’으로 변경되었으므로, 조례의 문구를 이와 같이 수정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‘환경보전 계획’ 용어를 ‘환경계획’으로 변경함(안 제18조제4항).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환경보건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환경정책기본법」 개정('20.12월)에 따라 기존의 '환경보전 계획'이라는 용어를 '환경계획'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기존 법률 제4조(총칙)에서 규정하고 있는 '환경보전계획'을 '환경계획'으로 수정한 것으로,

기존의 '환경보전계획'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획들을 망라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국가환경종합계획(제14조),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(제17조), 시·도 환경보전계획(제18조), 시·군·구 환경보전계획(제19조) 등이 이에 포함됨.

동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국가 및 지자체의 '환경보전계획'들이 자연, 대기, 수질과 같은 환경보전 대상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, 향후에는 환경보전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환경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'환경계획'으로 확장·발전시키고자 한 것임.